제한차량 운행허가([] 신규 []변경)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	접수일				처리기간	10일		
신청인	성명 생년월					생년월일	일			
	주소									
차량 형식 (①참조)	자동차	(차량)등록번호								
	건설기계									
차고지	주소									
차량 제원 (①참조)	축수	가장 먼 축간거리		규격		중량				
			폭	높이	길이	차량중		적재량	차량총중량	
	축	mm	mm mm		mm E		톤	톤 	톤	
허가신청 제원	 폭		규격 높이 길0		ol	중 하중	중량 중 차량총중량			
(②참조)	1	mm	mm		mm	-		톤 톤		
※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.										
 화물	종류				제원/중량					
차량운행	운행목적			운행기간						
	운행 방법									
운행경로 (구간)	출발지		도착지			총인	총연장			
		\rightarrow		\rightarrow			\rightarrow		\rightarrow	
		\rightarrow	\rightarrow		\rightarrow		\rightarrow	\rightarrow		
		→	→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.(예: 국도ㅇ호선			!	→ 			
	· ·		T				명 능)			
변경 경위	구		허가 연월일		허가번호		변경내용			
	제1									
	제2 제3									
 「도로법」 제7 신청합니다.			을 법 시행령 :	제79조제4	항에 따라	제한차량	의 운행	허가를	위와 같이	
							Ļ	크	월 일	
도로관리청	장 귀하					신청인		()	너명 또는 인)	
								수수 6		
첨부서류 및 처리절차	뒤쪽 참조						수수료 5,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			
							조례.	도 성하	는 금액	

신청구분	신규 신청	변경 신청	
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	1부	1부	
② 차량 중량표	1부	-	
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			
•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	(N)부	-	
·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(필요 시)	(N)부		

첨부서류

- 1. (N)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(기관)의 개수입니다.
- 2.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,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- 3. 「도로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,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, ②,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4.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,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5.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6. 차량 중량표(②)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이 위의 확인사항 중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<신청서 접수>

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<심사>

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<다른 도로관리청 협의>

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 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<심사결과 통지>

허가또는불허가 통지

※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.